

의안번호	2200745
의 퇴 인	민홍철의원
회 답 일	2024. 6.19.
추 계 번호	24B0862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37조의2 (양로시설 등 설치)	공주택사업자는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택단지에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(이하 “양로시설등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함 -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, 인근 지역의 양로시설등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양로시설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7조의2(양로시설 등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양로시설 등 설치(안 제37조의2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·출자액이 증가할 수 있음
 -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는데,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([표 1] 참고),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·출자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

[표 1] 공공주택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설 관련 주택도시보증금의 주요 용자·출자사업비(2024년)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4년도 계획
공공임대(용자)	2,360,905
다가구매입임대출자	2,434,322
다가구매입임대(용자)	3,612,000
전세·매입임대경상보조	145,290
전세임대(용자)	4,546,931
국민임대출자	117,366
국민임대(용자)	157,653
영구임대출자	82,321
행복주택출자	528,783
행복주택(용자)	838,319
임대주택리츠출자	300,000
통합공공임대출자	1,220,076
통합공공임대(용자)	1,417,137

자료: 국토부의 「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수와 설치 규모,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
 -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시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 적정성 검토를 하고, 그 결과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현시점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의 수와 그 규모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활용할 적정성 검토 기준 및 이를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수 등을 알 수 없음
 - 다만, 참고로 500세대 이상 단지 건설현황은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nabo.go.kr

[참고자료] 500세대 이상 공공임대주택 단지 건설실적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(단위 : 만호, 준공기준)

	‘19	‘20	‘21	‘22	‘23
서울	0.1 (1곳)	0.4 (6곳)			
경기	0.4 (4곳)	0.1 (1곳)	0.3 (3곳)	0.4	—
광주	0.1 (1곳)	0.1 (1곳)			
부산	0.2 (1곳)		0.1 (1곳)	0.1	0.3 (3곳)
인천					0.1 (1곳)
강원	0.1 (1곳)				
충남				0.1	
전북	0.1 (1곳)			0.1	
전남	0.1 (1곳)				
경북	0.2 (1곳)	0.1 (1곳)			
경남		0.2 (2곳)			
LH	2.5 (31곳)	3.7 (40곳)	2.2 (25곳)	3.0	1.9 (22곳)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